

제2부 부문별 행정



제4편 복지경제국 _ 제3장 생활보장과

제1절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제2절 / 자활사업 및 의료급여

제3절 / 찾아가는 희망복지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1. 사업개요

가. 법 제정추진 경과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부의 생산적 복지이념과 시민단체, 정당, 정부 등 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99. 9. 7 제정, 1년여의 준비를 거쳐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

나. 제정 의의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 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전환하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 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욕구에 따라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돋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유지를 위해 자신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보충적 지원이다. 이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원할 수 있으며, 조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조건 불이행 시 생계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도록 하고 있음.

라. 주요내용

- 1)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차등화를 통한 욕구별 맞춤형 급여 지원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소득·재산 범위 확대
- 2) 자활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 구현
 - 근로능력자에게 근로유인 장치를 두어 근로의욕을 고취
 -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한 체계적 자활지원

마. 기초생활보장 업무 처리절차

1) 신청

- 신청권자 : 보호대상자, 친족 및 관계인, 복지담당공무원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소득·재산관계서류 등

2) 조사

- 조사대상 : 보장가구원, 부양의무자 가구원
- 조사내용
 - 신청인의 복지욕구와 관련된 사항 및 신청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
 - 보호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상태 등
- 조사방법 : 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적용 및 가정방문 현장조사

3) 보장결정

- 보장의 단위 : 가구를 단위로 보장하되 특히 필요시 개인단위 보장
- 결정·통지 :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장여부 결정 후 서면통지
- 2018년 기초생활수급자 조사현황

(단위 : 세대)

계	적합	부적합	보호중지	비고
6,559	3,037	2,018	1,504	

4) 변동·사후관리

- (변동관리) : 정보시스템에 의한 소득·재산, 인적사항 등 변동사항 정비
- (사후관리) : 부정·중복수급 예방 및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환수

2. 2018년 사업현황 및 실적

가.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실적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금액(천원)	비고
국고보조사업		31,802,630	
구분	생계급여	5,092가구	24,556,211 생계급여수급자
	주거급여	5,621가구	7,018,963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	3,597명	45,310 초중고 교육급여수급자
	해산·장제급여	261명	189,341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정부양곡	33,801가구	680,690 수급자, 차상위
	월동대책비	261가구	26,100 수급자, 차상위
	자녀교통비	1,974명	149,223 수급자, 차상위 자녀

나.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시설제외)

(단위 : 명)

구분	총수급자		일반수급자		특례수급자	
			소계		소계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합계	7,290	9,865	7,072	9,531	218	334
서 1 동	608	810	598	798	10	12
서 2 동	550	709	529	670	21	39
서 3 동	704	932	690	915	14	17
금사동	417	570	410	562	7	8
부곡1동	767	1,007	738	965	29	42
부곡2동	387	556	369	527	18	29
부곡3동	293	399	279	377	14	22
부곡4동	482	620	470	605	12	15
장전1동	297	399	290	390	7	9
장전2동	218	264	214	258	4	6
장전3동	230	301	221	286	9	15
선두구동	116	137	114	135	2	2
청룡노포동	265	346	254	329	11	17
남산동	1,135	1,628	1,093	1,555	42	73
구서1동	291	408	283	396	8	12
구서2동	509	755	499	739	10	16
금성동	21	24	21	24	0	0

다.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 근로능력여부 및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 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법 제6조)
- 재산의 소득 환산율

구분	종류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주거재산 제외)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
수급권자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		월 1.04%	월 4.17%		

2) 2018년 급여별 선정기준

(월/천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생계급여	512	871	1,128	1,384	1,640	1,896	2,152
의료급여	682	1,162	1,504	1,845	2,186	2,528	2,869
주거급여	751	1,278	1,654	2,029	2,405	2,781	3,156
교육급여	853	1,453	1,880	2,306	2,733	3,160	3,587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지원 내용 〉

구 분	내 용
생계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과 가구별 선정기준 차액을 각종 급여로 지원하는 보충 급여 ❖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주거급여 (현금·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가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임차급여 차등지급 - 자가 가구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을 위한 수선유지급여 지급
교육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고등학생 정규 교육과정 교과서 전체 ❖ 부교재비(초등학생 : 66천원, 중·고등학생 : 105천원) ❖ 학용품비(초등학생 : 50천원, 중·고등학생 : 57천원)
해산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가구의 출산여성 1명당 600천원(쌍둥이 600천원 추가)
장제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가구원이 사망한 경우 1구당 750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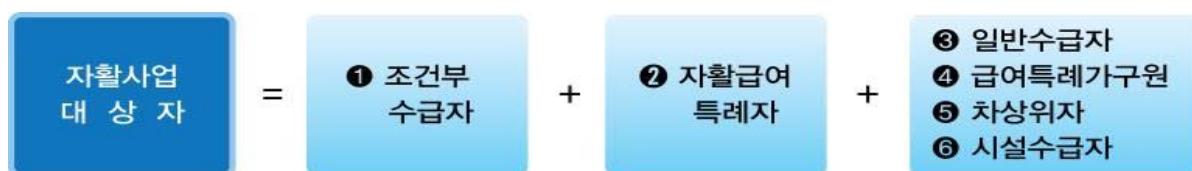
제2절 자활사업 및 의료급여

1. 자활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자활사업 참여는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 급여특례자 그리고 차상위계층도 그 대상으로 한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18세이상 64세이하의 수급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제시된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생계급여 지급이 가능하며,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자와 근로무능력자의 경우는 본인 희망에 의해 자활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가. 대상자



– 의무참여 : ①, 희망참여 : ②~⑥ – 수급자 : ①②③ – 참여우선순위 : ① → ② → ③④⑤⑥

나. 자활사업참여자 배치 및 인건비 지급

1) 자활사업참여자 배치 기준 : 자활역량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 배치

자활사업종류	실시기관구분	기준	판정 대상자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고용노동부 자활사업	고용센터 ◆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아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이 가능한 자	집중취업지원 대상자 (70점 이상)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기관 ◆ 자활근로프로그램 참여욕구가 높은 자 ◆ 일용·임시직으로 직업경험이 있는 자	근로능력강화 대상자 (45~69점)
	근로유지형	시·군·구, 지역자활센터 ◆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에 참여 가능한 자 ◆ 간병·양육 등 가구여건상 관내 사업만 참여 가능한 자	근로의욕증진 대상자 (45점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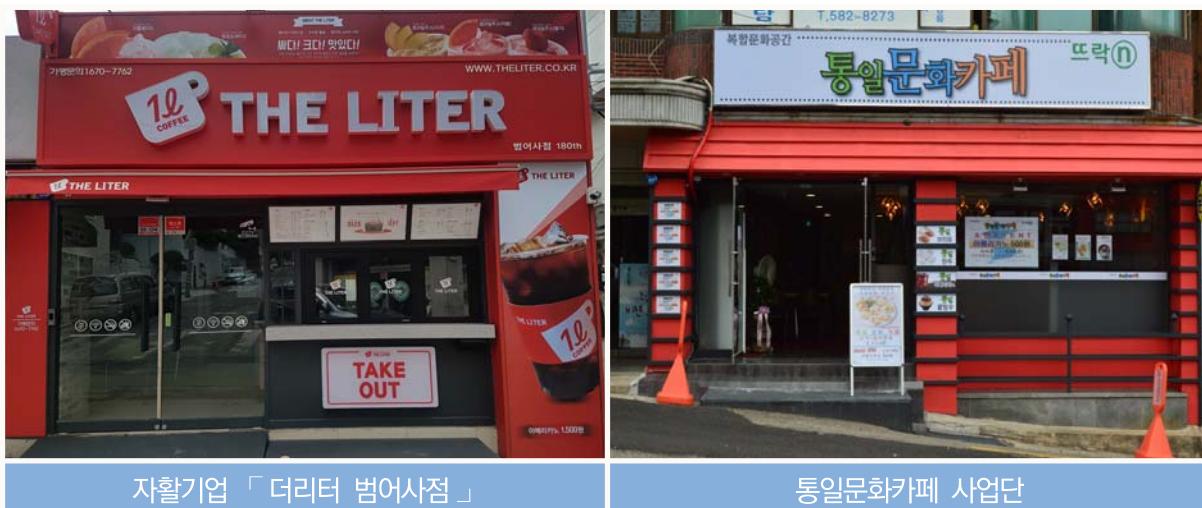
2) 자활사업참여자 인건비 지급 기준

(원/인·일)

구분	시장진입형/ 기술자격자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기술자격자	근로 유지형
		복지·자활도우미 인턴형	사회복지시설 도우미형		
지급액 계	<u>42,210/</u> <u>44,210</u>	<u>42,210</u>	<u>38,190</u>	<u>38,190/</u> <u>40,190</u>	<u>27,110</u>
급여단가	<u>38,910/</u> <u>40,910</u>	<u>38,910</u>	<u>34,890</u>	<u>34,890/</u> <u>36,890</u>	<u>23,810</u>
실비	<u>3,300</u>	<u>3,300</u>	<u>3,300</u>	<u>3,300</u>	<u>3,300</u>
표준소득액 (월)	<u>1,011,660</u>	<u>1,011,660</u>	<u>907,140</u>	<u>907,140</u>	<u>619,060</u>
비고	1일 8시간, 주5일				1일5시간, 주5일

다. 2018년도 추진 성과

- 1) 신규 자활사업장 『드림클린』, 『드림물류』, 『통일문화카페』 발굴로 28명 일자리 창출
- 2) 신규 자활기업 『더리터 범어사점』 진출로 3명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 3) 자활기금 2회 5,400만원 지원
 - ▷ 카페더찬 사업단 환경개선 1,450만원,
 - ▷ 통일문화카페 신규사업단 환경개선 3,950만원
- 4) 자활 참여자 역량강화 및 직무교육 실시
 - ▷ 16회 474명
- 5) 기초생계급여 대상 자활참여자 대비 자활성공률 : 47.7% (94명/197명)



라. 2019년도 자활사업 추진 계획

(단위 : 명/천원)

사업 유형	실시 기관	사업명	사업내용	변동	인원	예 산 액(천원)			비고					
						계	인건비	사업비						
자활기업(4), 자활근로사업단(18), 고용노동부(1) ▶23개사업단						237	2,996,534	2,564,538	431,996					
자활 기업	소계(4개사업단)					13	32,520	32,520	0					
	부산시광역 자활센터	희망을만드는교실	장애인아동통합교육보조	기준	2	0	-	-						
	금정구지역 자활센터	명진클린	전문청소용역	기준	6	0	-	-						
		카페부산대점	디저트카페전문점	기준	2	0	-	-						
시장 진입 형	더리터범어사점	커피전문점	기준	3	32,520	32,520	-							
	소계(7개사업단)					43	1,078,135	767,128	311,007					
	금정구지역 자활센터	카페구청2	금정구청 1층 북카페	기준	4	138,700	72,572	66,128						
		카페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내카페	기준	4	126,910	72,700	54,210						
		금정북카페	금정도서관 1층 북카페	기준	6	138,750	107,600	31,150						
		드림택배	정부 양곡배송사업	기준	9	192,467	161,920	30,547						
		카페더찬	반찬,샌드위치,커피 판매	기준	4	125,500	70,836	54,664						
		다리미	세탁편의점 사업	상위진입	3	80,178	54,200	25,978						
		드림클린	전문청소용역	상위진입	13	275,630	227,300	48,330						
인턴 도우 미형	소계(2개사업단)					10	157,537	157,297	240					
	금정구지역 자활센터	자활도우미	지역자활센터업무보조	기준	1	15,960	15,720	240						
	구직영	복지업무도우미	사회복지업무보조	기준	9	141,577	141,577	-						
사회 서비스형	소계(6개사업단)					87	1,411,469	1,295,695	115,774					
	금정구지역 자활센터	드림플러스	가내수공업(부품조립 등)	기준	20	309,058	303,690	5,368						
		드림물류	기업연계형 물류 포장작업	기준	8	125,930	121,970	3,960						
		통일카페	북한문화 전시 및 음식, 커피, 음료 판매	기준	6	172,096	89,760	82,336						
		도서관실무원	지역 및 학교 도서관 실무원 파견	신규	13	204,160	198,440	5,720						
		어르신드림케어	지역 내 경로당 환경개선 지원	신규	20	323,661	305,271	18,390						
		구직영	수목가꾸기사업(공익형)	기준	20	276,564	276,564	0						
Gate Way 형	소계(1개사업단)					11	138,480	133,505	4,975					
	금정구지역 자활센터	Gate-Way	자활참여자 초기과정	기준	11	138,480	133,505	4,975						
근로 유지 형	소계(2개사업단)					23	178,393	178,393	0					
	구직영	동복지지원	안부확인 및 동주민센터환경정비	기준	17	137,834	137,834	0						
		시설관리지원	시설환경정비 관리	기준	6	40,559	40,559	0						
취업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기준	50	0	-	-						

2. 의료급여

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종, 2종으로 구분되며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

종 별	대 상
1 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시설수급자 ❖ 타법적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 국가중요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등록 결핵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 행려환자
2 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의료급여현황 〉

(2018. 12. 31. 기준)

동 별	합 계		1종		2종	
	세대	명	세대	명	세대	명
합 계	7,090	8,825	5,624	6,348	1,466	2,477
서 1 동	515	656	407	469	108	187
서 2 동	518	642	417	471	101	171
서 3 동	609	751	486	559	123	192
금 사 동	377	488	290	331	87	157
부 곡 1 동	686	896	569	672	117	224
부 곡 2 동	331	406	259	293	72	113
부 곡 3 동	290	350	216	244	74	106
부 곡 4 동	446	554	345	394	101	160
장 전 1 동	253	315	190	216	63	99
장 전 2 동	493	521	466	479	27	42
장 전 3 동	214	273	179	210	35	63
남 산 동	1,049	1,395	752	865	297	530
구 서 1 동	265	343	208	239	57	104
구 서 2 동	490	607	349	380	141	227
금 성 동	22	25	20	22	2	3
선 두 구 동	118	137	101	113	17	24
청 룡 노 포 동	376	428	332	353	44	75
행 려 환 자	38	38	38	38		

나. 의료급여의 내용

수급권자의 진찰,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약제 또는 치료 재료, 의료급여기관에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등의 의료급여를 받는다.

1) 의료급여의 범위에 제외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 특진 보조기, 의치, 의한, 각종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 등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자신의 범죄행위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및 제3자의 고의, 과실 행위로 인한 진료
- 자동차 손해보상보험법, 민법 등에 의하여 가해자가 진료보상이 가능한 경우

〈 의료급여 본인일부 부담금 조견표 〉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종별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외래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1,50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1,000원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5%	특수장비총액의 15%					
	제2차 의료급여기관	원내 직접 조제	2,000원	만성 질환 자	1,500원	만성 질환 자 외	총진료비의 15%		
		그 이외의 경우	1,500원		1,000원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5%		특수장비총 액의 15%				
	제3차 의료급여기관	원내 직접 조제	2,500원	총 진료비의 15%					
		그 이외의 경우	2,000원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5%						
입원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무료	총 진료비의 10% 고위험임신부5%, 제왕절개분만 산모 무료						
약국	직접조제	900원	900원						
	처방조제	500원	500원						
	보건기관 처방조제	무료	무료						

※ 그 이외의 경우 : 원외처방전 발행이 있는 경우, 원내직접조제와 원외처방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원내 또는 원외로 의약품 처방 없이 진료를 실시한 경우

제3절 찾아가는 희망복지

1.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

가. 추진배경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제도 등 복지제도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틀은 구축되었으나, 중앙부처 및 지자체 복지사업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전달되는 복지 깊때기 문제 심화로 종합상담 및 정보제공, 찾아가는 서비스 등 복지수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 어려웠고 국민의 복지체감도는 낮아 복지서비스의 효율적 전달체계 구축 필요성이 대두됨.

나. 추진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보건복지부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추진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16년 2월 맞춤형 복지 권역형 중심동 2개동(서2동, 남산동)을 설치하여 인근 일반동 5개동(서1동, 서3동, 금사회동동, 선두구동, 청룡노포동)을 총괄하는 형태로 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17년 1월 권역형 중심동 3개동(부곡1동, 장전2동, 구서1동)을 추가 설치하여 인근 일반동 7개동(부곡2동, 부곡3동, 부곡4동, 장전1동, 장전3동, 금성동, 구서2동)을 총괄하는 형태로 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확대 추진함.

올해부터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로 명칭 변경되었으며 2019년 1월부터 일반동 4개 동(서3동, 부곡4동, 장전1동, 구서2동)과 권역형 중심동 1개 동(구서1동)을 기본형으로 전환하여 현장 밀착형 동 복지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임.

- 추진 전 -

동 주민센터 « 복지급여 신청 접수 »
내방민원 대응 중심
신청하는 제도 지원
공적제도 중심 연계

- 추진 후 -

동 행정복지센터 «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 »
먼저 찾아가서 실태확인
필요한 서비스 종합지원
민간자원도 폭넓게 활용

다. 추진내용

동 중심의 복지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설치하여 찾아가는 복지상담,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가가구 통합사례관리, 민간자원 연계 활용 등 가구별 욕구에 따른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위기상황을 해결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복지기관 등 민관 복지협업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음.

라. 2018년 추진 실적

구분	세 부 내 용
찾아가는 복지상담	방문 목표제 실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방문용 차량 구입, 희망우체통 제작 비치, 이웃돌봄엽서 제작, 전입세대 안내문 제작 배부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취약계층 전수조사, 찾아가는 희망의 날 운영, 복지사각지대 발굴단 상시 운영, 야쿠르트 지원 안부확인 등
통합사례관리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외부전문가 슈퍼비전, 금정 해피존 네트워크(22개 기관 참여) 공동 사례관리, 복지정보북 제작 배부 등
민·관 협력	해충방제·야쿠르트·안과 등 협약 체결, 공동모금회 협약 행복충전 희망나눔사업, 반찬하나 더하기사업, 금정복지박람회 참여 등



희망우체통 제작 비치



취약계층 전수조사 교육



행복충전 희망나눔사업(안심 LED센서등)



하우스 클린사업(해충방제) 추진



금정복지박람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홍보부스 운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케이트키퍼 양성교육 1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케이트키퍼 양성교육 2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선진지 벤치마킹



찾아가는 복지팀 워크숍



희망동지 러브하우스

2. 통합사례관리 사업

가. 사업개요

1) 개념

- 지역 내 공공·민간자원을 토대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 해 나가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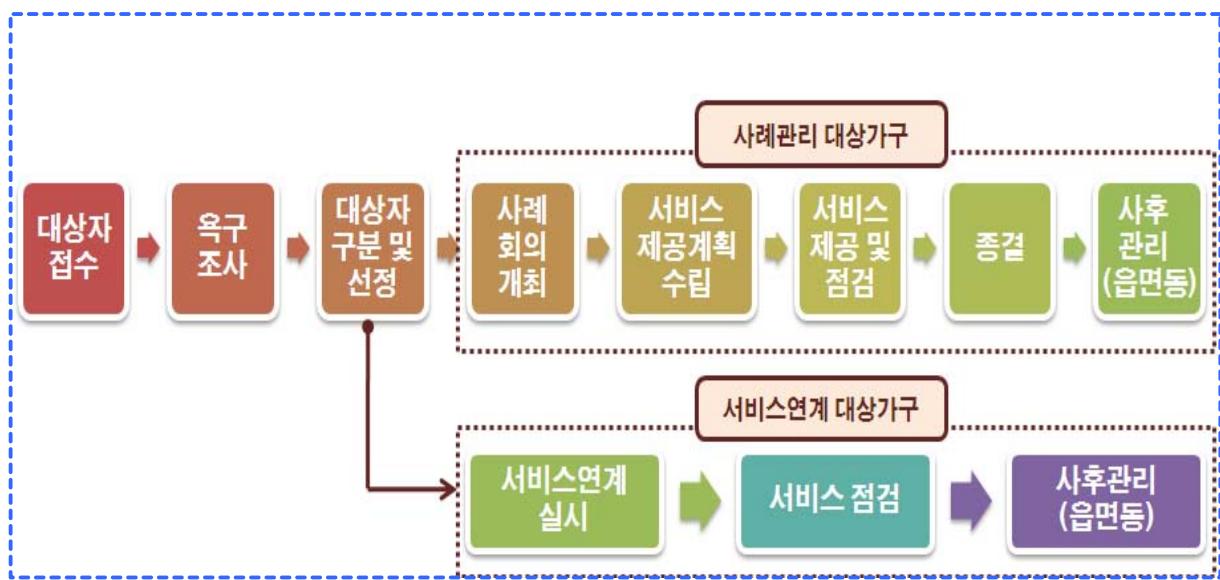
2) 목적

-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하여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복지제도의 효율성 향상

3)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2(통합사례관리)

4) 절차



5) 운영체계

- 희망복지지원단에서 고난도 사례관리, 슈퍼비전 및 솔루션회의 운영, 동 관리 및 지원 등 통합사례관리사업 총괄 관리
 - ▷ 통합사례관리사 4명 배치 : 통합사례관리 및 이관콜 업무 수행
- 동 주민센터에서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 발굴, 초기상담,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종결가구에 대한 사후관리 수행

나. 2018년 추진실적

- 통합사례관리 : 200건 ▷ 신규 : 67건, 종결 : 71건
-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 연계 : 471건
 - ▷ 긴급복지 · 기초보장 등 공적제도 신청, 입 · 퇴원 지원, 후원금 신청 등
- 내부사례회의 : 43회, 금정해피존 네트워크 통합사례회의 : 12회
- 「찾아가는 희망의 날」 운영 4회, 실무자 교육 7회 등



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 사업개요

1) 의의 및 특성

-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 실시하는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 · 기획하는 사업

○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활용한 수요자 중심

- 서비스 수요자에 대해 바우처를 지원, 원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공급자 주도 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접근으로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

기존 방식	새로운 방식
① 공급자 지원	① 수요자 지원(바우처 방식)
② 단일한 제공기관	② 복수의 제공기관
③ 중앙정부의 직접 가격 결정	③ 시장, 경쟁을 통한 가격 결정
④ 중앙집중식 · 하향식	④ 지방분권식 · 상향식

2) 사업목적

- 지역별 · 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mass-customized service)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 · 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
- 지역인적자본 형성, 고용 취약계층 근로 촉진 등 사회 투자적 성격의 사업을 집중지원,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사회경제적 자립 기반 확충

나. 2018년 사업현황 및 실적

1) 사업현황

- 아동 · 청소년심리치유서비스 등 10개 사업

2) 예산액 : 1,278,000천원 ▷ 국비 894,600 시비 255,600 구비 127,800천원

3) 사업내용

- 아동 · 청소년심리치유 서비스(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내 나이가 어때서),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시각 장애인 안마 서비스, 동화야 놀 ~ 자(스토리텔링), 해양역사 문화체험 아카데미, 아동건강관리서비스, 자녀의 성공을 돋는 부모코칭(키울mom난다!), 뇌에 기(氣)가 팍팍!, 아동정서발달 지원 서비스

4) 이용 및 지원 실적

- 서비스 이용 : 총 1,801건(실 인원)

- 지원 실적 : 1,177,624,240원

▷ 국비 824,336,970 시비 235,524,850 구비 117,762,420원

4. 긴급지원제도 실시

가. 긴급지원제도

기본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 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임.

나. 지원 대상 : 갑작스런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자

- 1)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5)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하게 된 경우
-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이혼, 단전 등)

다. 지원요청 또는 신고자

- 1) 요청자 : 위기상황에 처한 자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발견한 자
- 2) 요청처 : 구청 긴급지원담당(☎519-4785) / 보건복지콜센터(129)

라. 지원기준

- 1) 재산 : 13,500만원이하, 금융재산 500만원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2) 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증위소득 100분의 75% 이하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원 / 월	1,254,079	2,135,323	2,762,363	3,389,402	4,016,441	4,643,480	5,270,519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27,039원씩 증가
(8인 가구 5,897,558원)

마. 지원원칙

- 1) 선지원 후처리, 단기지원, 타 법률 지원 우선, 가구단위지원 원칙 등
-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 감당 곤란한 경우 의료 지원

바. 긴급지원 기간 및 내용

1) 단기지원원칙 : 시·군·구청장에 의한 지원

○ 원칙(선지원) : 1개월

○ 연장지원 : 2개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의한 추가 지원 - 생계 및 연료비 3개월, 의료 및 교육지원 1회, 주거지원 9개월)

2) 지원내용

(단위 : 천원)

지원종류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그 밖의 지원
지원기간	3개월	1회	1개월	1개월	1개월
지원금액	1인 432~ 6인 1,603	300만원 이내	1인 387~ 6인 848	1인 535~ 6인 1,987	<ul style="list-style-type: none">초·중·고생 교육비연료비 : 96(동절기 10 ~ 3월)해산비 : 600장제비 : 750단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 500

3) 2018년 지원 실적

○ 863건(생계 524/ 의료 152/ 주거 14/ 교육 0/ 연료 173/ 장제 0/ 해산 0)

○ 지원금액 : 546,130,440원

5. 아름다운 순회봉사단 운영

소외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분야별 전문직 자원봉사자로 금정 「아름다운 순회봉사단」을 조직·구성하여 2000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며, 매년 관내 저소득 주민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가. 봉사단 : 9개 분야 12개 기관·단체 92명(전문가 40명, 자원봉사자 52명)

▷ 한방·내외과 등 의료분야, 시력검진, 이·미용, 장수사진촬영, 건강체험, 예쁜 손 가꾸기, 복지상담, 무료급식

나. 수혜대상 : 금정구 지역 내 저소득 주민 및 어르신

다. 최초구성 : 2000. 6. 11.

라. 운영일시 : 2018. 9. 7.(금)

마. 지금까지 추진실적

연도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운영회수	2회	1회	2회	2회	2회	2회	2회	2회	2회	2회	1회
봉사인원	156명	61명	149명	160명	156명	158명	174명	210명	239명	234명	92명
수혜인원	1,062명	820명	1,462명	883명	1,856명	1,679명	2,036명	1,942명	2,692명	2,352명	953명



아름다운 순회 봉사단(한방진료)



아름다운 순회 봉사단(시력검진)



아름다운 순회 봉사단(이용)



아름다운 순회 봉사단(미용)



아름다운 순회 봉사단(장수사진)



아름다운 순회 봉사단(예쁜 손 가꾸기)

6. 이웃돕기 성금 모금

이웃돕기성금(품)모금은 종전에는 관 주도로 성금을 모금하고 관리 운영하여 왔으나, 1997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정 공포에 따라 1998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 및 공감 유도를 위해 매년 연말연시 희망나눔 캠페인을 실시하여 성금(품) 모금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가. 희망2019 나눔캠페인 모금기간 : 2018. 11. 20. ~ 2019. 1. 31.

나. 희망2019 나눔캠페인 모금실적

(단위 : 천원)

모금목표액	총모금액	성 금			성품
		계	일반성금	지정성금	
276,452	517,433	282,538	163,735	118,803	234,895